

공정거래위원회 감사·감찰 조치기준

(2013.10.1. 개정)

1.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리 기준

가.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화· 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1. 조사정보 유출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교

- 제6호 청렴의무 위반 중 금품·향응수수에 대한 처리기준은 1.나.와 같다.
- 제7호 다목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제7호 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1.다.와 같다.
- 제11호에 해당하여 견책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를 징계처분 일자부터 5년간 사건부서에 임용할 수 없다.
- 청렴의무 위반으로 주의경고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비사건부서로 전보조치(비사건부서 근무자는 다른 비사건부서로 전보)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 집합교육(40시간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 위원회 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정부청사관리소에 청사출입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나.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

비위 유형		수수 행위	금액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	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미만	1,000만원 이상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인 금품· 향응수수의 경우	수동	견책	감봉·정직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견책·감봉	정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동	감봉	정직·강등	해임	파면		
	능동	정직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동	강등	해임	파면			
	능동	강등·해임	해임·파면	파면			

※ 3만원까지는 행동강령에 의해 면책, 3만원초과~5만원미만'은 '주의,
5만원이상~10만원미만'은 '경고'

※ 위 처리기준에 의거 정직 이상인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감봉 이하의 경우에는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함

※ 청렴의무 위반행위를 제언·주선한 자에 대해서는 1단계 상향 징계처분 요구

다.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견책 - 감봉	1. 근평 감점기준(1회당) - 징계 : 3.0점 - 주의, 경고 : 1.0점 2.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 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중상해"란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중대변형, 신체기능의 영구상실 등 완치 가능성이 희박한 불구·불치의 부상·질병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부상·질병을 말한다. 5.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 조치) 제1항 :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감봉 - 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감봉 - 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강등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중상해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직 - 해임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강등 - 해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정직 - 파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해임 - 파면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

-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중징계의결 요구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요구

라. 자체감사 조치기준

조치대상 (위법·부당한 사안)	조치기준	비 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 해임	○근평 감점기준 (1회당) - 징계 : 3.0점 - 주의, 경고 : 1.0점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 정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해임 -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정직 - 견책 또는 경고 - 주의	
경미한 사항으로 즉시시정이 필요한 경우	현지시정	
개인책임으로 보기 곤란한 소속부서의 중과실 책임	기관경고	
개인책임으로 보기 곤란한 소속부서의 경과실 책임	기관주의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고발	

※ 동일사항 또는 동일유형으로 회계연도기준 3년 이내 2회 이상 경고 또는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그 정상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마. 자체감찰 조치기준

조치대상 (1회계연도 기준)		조치기준	비 고
무단 결근	1회	주의, 당직 또는 휴일행사 차출 1회	○근평 감점기준 (1회당) -징계 : 3.0점 -주의, 경고 : 1.0점
	2회	주의, 당직 또는 휴일행사 차출 2회	
	3회	경고, 당직 또는 휴일행사 차출 2회	
	4회 이상	징계	
무단 지각 (신고지각 3회는 무단지각 1회 간주) 무단 조퇴 무단 이석	1회	해당 부서장의 정신교육, 당직 또는 휴일행사 차출 1회	○근평 감점기준 (1회당) -무단지각 : 0.3점 -무단조퇴, 무단이석 : 0.5점 *단, 무단조퇴이석은 2시간 이상인 경우 -징계 : 3.0점 -주의, 경고 : 1.0점
	2회	주의, 당직 또는 휴일행사 차출 1회	
	3회	경고, 당직 또는 휴일행사 차출 2회	
	4회 이상	징계	
불친절 공무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1~2회	해당부서장의 정신교육, 당직 또는 휴일행사 차출 1회	○근평 0.5점 감점 (1회당)
	3회	특별친절교육, 당직 또는 휴일행사 차출 1회	
	4회	주의, 당직 또는 휴일행사 차출 2회	○근평 감점기준 (1회당) -징계 : 3.0점 -주의, 경고 : 1.0점
	5회	경고, 전보발령 등 불이익 조치 병과	
	6회 이상	징계	

※ 상기 사항으로 1년 이내 2회 이상 경고 또는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경우 그 정상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2.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리 기준

구분	부패행위자		신고의무 위반자	
			직근 상급 감독자	기타 공직자
징계 내용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해임	강등	정직
		강등	정직	감봉
		정직	감봉	견책
	경징계	감봉	견책	기타
		견책	기타	기타

* 기타 : 공무원 징계령상의 징계는 아니지만, 주의·경고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사실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

3. 징계의 감경 및 감경 제외

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의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감경할 수 있으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나. 다만, 징계처분이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는 감경할 수 없다.